

2025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1차 공고

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『전력구동 모빌리티용 전지 및 에너지생산·저장 융복합산업 개방형 혁신사업』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04월 21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울산광역시장, 울산테크노파크원장

1. 지원개요

- (사업명) 전력구동 모빌리티용 전지 및 에너지생산·저장 융복합산업 개방형 혁신사업
- (지원규모) 총 120백만원
 - 지원금 : 30백만원이내/ 4개사
 - 기업부담금 : 현금 10%이상
- (지원기간) 2025. 05. ~ 2025. 12. (8개월) ※사업수행완료기간임

2. 지원대상(신청기업)

- (지원분야) 전력구동 모빌리티용 전지 및 에너지생산·저장 융복합산업 전·후방 연관산업 분야 (유망품목 :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)
- (지원자격) ①접수 마감일 현재 울산 지역혁신클러스터 지구 지번 소재 및 2025년 내 이전 예정 기업이고, ②울산 특화산업(전력구동 모빌리티) KSIC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

①-1) (지역 내)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* 내 중소·중견기업

①-2) (지역 외) 울산지역 외(타지역)에서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* 내 이전·신설예정 중소·중견기업**

*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 : [붙임 1] 참조

** 지역 외 기업은 지원기간 이내('25년 12월 말)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 내로 사업장(본사, 공장, 지사,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)을 이전·신설 완료하여야 하며, 이전 후 5년간 유지 必(제출서류 중 이전 협약서 작성 및 제출)

② (KSIC일치) 울산 특화산업(전력구동 모빌리티) 한국표준사업분류(KSIC) 해당 단, 타 업종일 경우 지원 기간 종료일 내 관련 KSIC 업종 변경시 지원가능

※ 울산 특화산업(전력구동 모빌리티) 한국표준사업분류(KSIC)

구분	KSIC	항목명
핵심 (5)	30121	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
	30201	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
	30310	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
	30332	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
	30399	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
연관 (15)	20111	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
	20411	일반용 도로 및 관련제품 제조업
	204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
	25923	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
	26295	전자감치장치 제조업
	26299	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
	26429	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
	27215	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
	28111	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
	30320	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
	30331	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
	30391	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
	30392	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
	62010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	63999	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

○ (신청제외 대상)

-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-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
- 기업의 부도
- 기업이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- 의무사항(보고서/성과실적 제출, 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거나, 각종 법령 위반(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)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, 정부지원사업,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

3. 세부 지원내용

○ (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) 총 1개

지원기관	프로그램명	세부 프로그램명	지원내용	지원건수
울산 테크노파크	오픈랩 인프라 연계 기술지원 (패키지지원)	① 기술자문(컨설팅) ② 시제품제작 ③ 성능, 시험평가/분석 ④ 애로기술해결	① 전력구동 모빌리티용 전지 및 에너지 생산·저장 융복합산업에 대한 기술자문, 컨설팅, 기술정보제공, 시제품제작, 성능, 시험평가/분석, 애로기술해결 등 기술지원(패키지지원으로 세부 프로그램 2개 항목 이상 선택 必) ② 반드시 오픈랩 인프라(인적, 물적지원) 연계 ③ 기업지원비 최대 3천만원 이내	4건

4. 평가방법 및 기준

- (평가방법)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→ 면담/현장실태조사(필요시) → 선정평가(필수)
 - (사전검토)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등 검토
 - (현장실태조사)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 현황 및 상태, 연구개발 역량 등을 파악하고 확인
 - (선정평가)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, 선정평가위원회 (발표, 서면평가)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

구 분	위원구성	평가항목
서류평가	-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평가위원 5인이상 평가	- 지원필요성(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등) - 지원의적정성(목표달성의 구체성 등) - 목표달성(지원내용 등의 구체성 등) - 기대효과(지원제품의 사업화 등) - 기타(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등)

* 붙임문서 참조

○ (선정기준) 평가단계별 선정기준

구 분	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	선정기준
서류평가	- 평가위원별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, 포함하여 계산함 -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	-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

5. 추진일정

○ 선정평가 추진일정

공 고 접 수	⇒	현 장 조 사	⇒	서 류 평 가	⇒	발 표 평 가	⇒	선 정 통 보	⇒	협 약 체 결
(공고) '25. 04. 21. ~ 05. 07.		'25.05월 (필요시 진행)		'25.05월 예정		'25.05월 예정 (필요시 진행)		'25.05월 예정		'25.05월 예정
(접수) "25. 04. 21. ~ 05. 07.										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6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공고기간) 2025. 04. 21.(월요일) ~ 05. 07.(수요일)
- (접수기간) 2025. 04. 21.(월요일) ~ 05. 07.(수요일) 23:59 까지
- (신청방법) 울산TP 홈페이지 '지원사업공고'에서 확인 후 오프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
 - (신청·접수처) 오프라인 및 이메일(PDF) 양식으로 담당자에게 송부

7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서식 여부	비고
1	사업계획서(사업비 산정 증빙서류포함)	붙임3	필수
2	사업자등록증 (종된 사업장명세(증명) 포함)	-	필수
3	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	붙임4	필수
4	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	붙임5	필수
5	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붙임6	필수
6	국세완납증명서	-	필수
7	기타(인증서, 특허 등)서류	-	해당시
8	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이전/설립 협약서 ※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이전 및 신규 설립 예정 기업	붙임7	해당시

*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8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E-mail을 통해 평가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계획서상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
 - 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붙임으로

- 제출해야하며, 필요시 온·오프라인을 통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장 이전·설립(해당기업에 한함)
 - 울산지역 외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이내('25년 12월 말)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구 내로 사업장 등 이전 완료 및 사업장 유지의무(5년)
 - * 사업신청 시 '사업장이전 협약서', 결과보고 시 '법인등기부등본', '사업자등록증', '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', '공장등록증' 중 해당 서류 제출 의무
- 공고된 기업지원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재공고할 수 있음.
- 사업비 지급은 수혜기업의 선지출 후 사업완료 후 정산으로 진행됨
 -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, 사업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
 - 부가세, 관세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

9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.
-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(단,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).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
 -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 - 연구자 또는 참여기업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
 - 연구자 또는 참여기업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
-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
-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
-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
-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-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- 연구자 또는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-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-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.
 -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.
 -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.

10. 이의신청

○ 이의신청의 범위

- (이의신청 가능 사항)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,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,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

*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

- (이의신청 불가 사항) 선정결과 통보, 평가위원 선정, 사업비 결정, 평가규정 및 절차, 평가방식(서류/발표/현장) 등에 이의가 있는 때

○ 이의신청 방법(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)

- (신청기한)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* 이내

* 5일 :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

- (제출서류) [붙임 08. 이의신청서]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에너지기술지원단 부서로 이메일 등 수신방법(noesky@utp.or.kr)

- (작성방법) 신청기업(기관)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, 통보일, 평가결과,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

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

- (유의사항)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,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
- 이의신청 방법(별도의 사업 지침을 따르는 경우)
 - (신청기한) 기한 기재
 - (제출서류) 서류 기재
 - (작성방법) 방법 기재
 - (유의사항) 유의사항 기재

11. 관련법규(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)

-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
-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(기업지원)사업 평가관리지침
-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- 연구자육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

12. 문의처

기관명	담당자명	전화번호	이메일	주소
울산 테크노파크	천성민	052-219-0966	smcheon@utp.or.kr	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-19 울산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208호
	송승훈	052-219-0968	naoesky@utp.or.kr	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-19 울산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208호

끝.